

##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20일				
신고인	성명 :	법인 등록번호 :						
	전화번호 :	사업자등록번호 :						
	SMS수신번호 :	전자우편 주소 :						
	주소 :	FAX번호 :						
등록사항	상 호 :	대표자 :	지적측량	일반측량	공공측량			
	소재지 :		등록번호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본점	측지측량	연안측량	지하측량	영상도화	영상처리	수치지도	지도제작	항공측량
<input type="checkbox"/> 지점								
변경사항	변경내용							
	변경 전				변경 후			
	사유							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지리정보원장  
시·도지사  
대도시 시장

귀하

구 분	신고인 제출서류	국토지리정보원장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확인사항	수수료
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변경 및 상호 변경의 경우	없음	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)	없음
법인 대표자 변경의 경우	없음	법인 등기사항증명서	
측량업용 장비 변경의 경우	1.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.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없음	
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인력 변경의 경우	1.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인력의 명단 2. 입사한 기술인력의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3. 입사·퇴사한 기술인력의 재직·퇴직 증명서	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(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)	

#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\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(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)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